2019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Ⅰ. 일 시 : 2019년 07월 11일 (목) 19:00~20:50

Ⅱ. 장 소 : 법인회의실

Ⅲ. 참석자 : 대표이사 박 ㅣ
이 사 이 , 이 김 , 황 , 옥 , 이 :
감 사 하 , 김 ㅣ

Ⅳ. 의안

- 제1호 의안 :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제2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 제3호 의안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
- 제4호 의안 : 법인기본재산 임대 계약 갱신의 건
- 제5호 의안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승인의건

Ⅴ. 보고사항

- 2019년 법인 하반기 중점사업 계획 보고
- 2019년 법인 산하시설 환경개선 사항 보고
- 절영지역아동센터 사업 종료 결과 보고

Ⅵ.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사 장 : 이사회 진행은 산하시설 시설장이 교대로 진행하고자 하며, 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 사회는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석 관장이 진행하고자 함.

대 사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석 장에게 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석 관장 :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후, 이사회 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함. 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대 사 : 201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회 선언과, 개회인사를 함.

2. 전차회의록 승인

대 사 : 석 진 관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함.

석 관장 : 전차이사회 회의록(2019년 03월 12일)을 자료를 토대로 낭독함. 2019년 정기이사회는 이사 총 11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제1호 의안 2018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안) 심의·의결, 제2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1차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의결, 제3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임원(이사, 감사) 임면의 건, 제5호 의안 절영지역아동센터 사업 종료의 건, 보고사항으로 법인외부회계감사 보고, 2019년 법인 중점사업 계획 보고를 진행하였음.

김 이사 : 전차회의록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음으로 전차회의록을 채택하길 제안함.

이 : 이사 : 동의함

황 이사 : 재청함.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함.

대 사 : 2019년 정기이사회(2019년 03월 12일) 전차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3. 의안채택 및 심의

대[illegible]사 : 의안심의에 앞서 의안채택을 제안함. 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제2호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 갱신의 건, 제5호 의안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신청 승인의 건이며 일괄 채택하여 호별 심의 하고자 하며, 이외 추가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안에 대해 요청함.

황 [illegible]이사 : 추가의안이 없으며, 대 [illegible]사가 제안한 총 5개의 의안에 대해 채택하여 순서대로 심의 하는 것에 동의함.

옥 [illegible] 이사 : 재청함.

참[illegible] 사 전원 : 찬성함.

대 사 : 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제2호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 갱신의 건, 제5호 의안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신청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진행할 것을 선언함.

가. 제1호 의안 :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 사 : 제1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

석 관장 : 제1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황 [illegible] 이사 :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

이 열이사 : 자료를 참조하나 증감 폭이 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석 [illegible]관장 : 법인과 각 산하시설에 대한 증감을 요약하여 설명함.

총 예산 금액은 1차 추경예산 22,141,220천원(22,141,220,716원)에서 2차 추경예산 22,731,165천원(22,731,165,000원)으로 589,944천원(589,944,284원)이 증가함. 법인산하시설 사업별 변동내역은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와 같음.

남광사회복지회 일반회계는 1차 추가추경예산 485,700천원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506,700천원으로 21,000천원이 증가함. 세입예산에서 지정후원금(직원복리후생)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및 산하시설 전출금이 증가함. 특별회계(수익사업)은 1차 추경예산 141,90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41,90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특별회계(적립금)는 1차 추경예산 217,53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217,53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남광아동복지원은 1차 추경예산 1,420,379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425,698천원으로 5,319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예산에서 종사자 입퇴사로 인하여 보조금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정후원금 및 직원급식비 등의 잡수입의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예산이 증가함. 세출예산은 식당테라스 및 생활실리모델링으로 재산조성비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예산이 증가함.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은 1차 추경예산 2,665,000천원 2차 추경예산 2,702,000천원으로 37,000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예산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 지원금에 따른 보조금수입과 외부지원사업 후원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대체인력지원으로 인건비 증가 및 서비스제공사업의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함.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정부지원사회서비스사업은

당초예산 2차 추경예산 513,00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남광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는 1차 추경예산 602,00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669,000천원으로 67,000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예산에서 가산금 수입으로 요양급여수입 증가 및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으로 잡수입이 증가함. 이에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가 증가함. 남광노인복지센터(노인돌봄바우처)는 2차 추경예산 34,00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남광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는 1차 추경예산 143,00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43,00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사무원 인건비증가로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 조정함.

남광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은 1차 추경예산 315,00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327,000천원으로 12,000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예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증가에 따른 요양급여수입 증가로 인건비 증가함. 남광노인복지센터(특별-적립금)는 2차 추경예산 268,00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남광노인전문요양시설 하회원(입소보호)은 1차 추가경정예산 455,20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481,200천원으로 26,000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예산에서 가산금 수입 증가로 요양급여수입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안정 지원금 증가로 잡수입 증가함. 세출예산에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인건비 반영으로 인건비 감소하였으나, 시설노후공사 및 소방점검공사로 시설비가 크게 증가함. 직원식재료비의 생계비 계정 이관으로 운영비(사무비) 감소하고 운영비(사업비)증가함.

하회원(방문요양)은 1차 추경예산 130,80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39,300천원으로 8,500천원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안정지원금 증가로 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함. 하회원(특별-적립금)은 2차 추경예산 61,600천

원으로 예산 변동사항 없음.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은 1차 추경예산 1,604,362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698,786천원으로 94,424천원 증가함. 세입예산에서 외부지원사업으로 지정후원금 수입이 크게 증가함. 세출예산에서 직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시설비 증가, 외부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증가함.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정부지원사회서비스사업은 2차 추경예산 170,869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와치노인복지센터는 1차 추경예산 1,016,740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022,227천원으로 5,487천원 증가함. 노인주간보호 식재료비 증가에 따라 입소비용수입 증가, 시도 보조금 수입 증가 및 방문요양 불용품매각대로 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및 시설비가 증가하였고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이 감소함. 와치어울림주간보호센터의 경우 2차 추경예산 106,375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와치지역아동센터는 1차 추경예산 99,947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17,567천원으로 17,620천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세입예산에서 환경개선비 확정으로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공동모금회 사업 지정후원금이 증가함. 이에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및 사업비가 증가함. 다솜어린이집은 1차 추경예산 663,155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669,355천원으로 6,200천원이 증가함. 이는 인건비보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함.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1차 추경예산 1,333,358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471,858천원으로 138,500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예산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기타 외부지원사업선정으로 후원금 수입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사업비 증가함. 절영지역아동센터는 1차 추경예산 90,619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91,119천원으로 500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에서 반환금으로 기타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증가함. 절영재가장기요양기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144,01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기쁜우리사회복귀시설은 1차 추경예산 209,034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214,324천원으로 5,290천원이 증가함. 이늘 세입예산에서 외부지원사업 선정으로 후원금수입이 증가하여 이에 사업비 증가함. 절영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는 2차 추경예산 1,346,79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절영사회서비스(발달지원센터)는 2차 추경예산 145,128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절영사회서비스(심리치유서비스)는 2차 추경예산 47,074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절영어린이집은 1차 추경예산 743,408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758,664천원으로 15,256천원 증가함. 세입예산에서 인건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세출예산에서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함.

금정구지역자활센터는 1차 추경예산 5,490,671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5,914,381천원으로 423,710천원이 증가함. 신규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사업수입 증가 및 보조금 수입 증가하였으며 이에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금정돌봄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차 추가경정예산 1,333,837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1,073,100천원으로 260,737천원 감소함. 사회복지법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로 이용자 서비스 제공시간이 감소하여 사업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사업비 세출이 감소함. 금정돌봄사회서비스(노인돌봄)는 1차 추경예산 273,534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 248,910천원으로 24,624천원 감소함. 이용자 및 사용시간 감소로 사업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사업비 세출이 감소함.

대 ,사 :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이 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석이사에게 질문을 요청함.

사 장 :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은 1차적으로 법인시설장들이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성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였음.

감 사 : 더 이상 부가적인 질문은 없으며 2019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시설별로 면밀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함.

대 ,사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해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가결 할 것을 요청함.

이 , 이사 : 동의함.

이 _ 이사 : 재청함.

참 . 사전원 : 찬성함.

대 . 사 : 제2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붙임(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에 의거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첨부)

- 이하여백 -

[2019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원)

법인명	사업별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증감	비고
총 계		22,141,220,716	22,731,165,000	589,944,284	
남광사회복지회	소 계	845,130,000	866,130,000	21,000,000	
	일반회계	485,700,000	506,700,000	21,000,000	2차추경
	특별회계(수익사업)	141,900,000	141,900,000	0	2차추경
	특별회계(적립금)	217,530,000	217,530,000	0	2차추경
남광아동복지원	소 계	1,420,379,716	1,425,698,000	5,318,284	
	남광아동복지원	1,420,379,716	1,425,698,000	5,318,284	2차추경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소 계	4,540,000,000	4,656,000,000	116,000,000	
	남광종합사회복지관	2,985,000,000	2,702,000,000	37,000,000	2차추경
	남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519,000,000	519,000,000	0	2차추경
	남광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602,000,000	659,000,000	57,000,000	2차추경
	남광노인복지센터(노인맞춤방수정)	34,000,000	34,000,000	0	2차추경
	남광노인복지센터(치기노인)	143,000,000	143,000,000	0	2차추경
	남광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315,000,000	327,000,000	12,000,000	2차추경
	남광노인복지센터(특별적립금)	268,000,000	268,000,000	0	2차추경
남광어린이집	소 계	516,600,000	542,600,000	26,000,000	
	어린이집(일소보조)	455,200,000	481,200,000	26,000,000	2차추경
	어린이집(방문요양)	130,800,000	139,300,000	8,500,000	2차추경
	어린이집(특별·적립금)	61,600,000	61,600,000	0	2차추경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소 계	2,998,293,000	3,115,824,000	117,531,000	
	와치종합사회복지관	1,604,302,000	1,698,726,000	94,424,000	2차추경
	와치사회서비스센터	170,869,000	170,869,000	0	2차추경
	와치노인복지센터	1,016,740,000	1,022,227,000	5,487,000	2차추경
	와치어린이주간보호	106,375,000	106,375,000	0	2차추경
	와치지역아동센터	99,947,000	117,567,000	17,620,000	2차추경
다솜어린이집	소 계	663,155,000	669,355,000	6,200,000	
	다솜어린이집	663,155,000	669,355,000	6,200,000	2차추경
광영종합사회복지관	소 계	3,316,013,000	3,460,303,000	144,290,000	
	광영종합사회복지관	1,333,358,000	1,471,858,000	138,500,000	2차추경
	광영지역아동센터	90,619,000	91,119,000	500,000	2차추경
	광영재가장기요양기관	144,010,000	144,010,000	0	2차추경
	기쁜우리사회복귀서실	209,034,000	214,324,000	5,290,000	2차추경
	광영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346,790,000	1,346,790,000	0	2차추경
	광영사회서비스(광영발달지원센터)	145,128,000	145,128,000	0	2차추경
	광영사회서비스(성인지원서비스)	47,074,000	47,074,000	0	2차추경
광영어린이집	소 계	743,408,000	758,664,000	15,256,000	
	광영어린이집	743,408,000	758,664,000	15,256,000	2차추경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소 계	7,098,042,000	7,236,391,000	138,349,000	
	금정구지역자활센터	5,490,671,000	5,914,381,000	423,710,000	2차추경
	금정종합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333,837,000	1,073,100,000	-260,737,000	2차추경
	금정종합사회서비스(노인맞춤방문서비스)	273,534,000	248,910,000	-24,624,000	2차추경

나. 제2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

대표이사 : 제2호 의안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을 상정함.

석 관장 : 제2호 의안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함.

사 장 : 제2호 의안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법인운영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등 전반적인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운영규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특성과 분야별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현재 운영규정 총 7편 12개의 규정 중에 복무관리, 인사관리,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재무회계에 관한규정, 시설관리에 대하여 각각의 법률 및 필수용어에 의거 맞추어 변경함. 또한 법인취업규칙은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법인운영규정의 변경과 근로기준법 개정 및 2019년 표준취업규칙에 의거 필수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조항들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사항 등 개정고용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용함.

대표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석이사에게 의견을 물음.

이 사 : 법인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물음.

사 장 :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진행됨. 상위법과 상충되지는 않도록 검토하였으며,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됨에 따라 보다 명확히 진행할 예정임

대표이사 : 더 이상 부가적인 질문은 없으며, 법인 운영규정과 취업규칙 개정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함.

옥　　이사 : 동의함

김　　이사 : 재청함.

참　　사 전원 : 찬성함.

대　　카 : 제2호 의안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다. 제3호 의안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

대　　사 : 제3호 의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을 상정함.

석　　관장 : 제3호 의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서　　관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서　　관장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015년 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5년 동안 위탁운영하고 있음. 위탁운영 약정상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에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올 하반기 8월에서 9월 이후 평가심사가 시작될 예정임. 또한 위탁심사 기준에 의거 법인의 적성성과 사업능력 등 법인의 운영능력 평가가 강화되었음. 매년 법인 전입금 2천만원으로 약정하여 위탁 심사 시 법인전입금 약정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임. 이에 법인 이사회를 통해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대　　사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서　라 관장의 설명내용과 자료를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석이사에게 의견을 물음.

김　　이사 :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개관하였으며, 초기 개관 시 우리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였는지 물음.

사　장 :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초기부터 남광사회복지회가 직접 위탁 받아 운영하였으며, 올해 절영복지관 위탁을 준비하고 내년에는 와치복지관이 위탁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향후 1~2년 내에는 위탁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향후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사회서비스원에서 각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　ㅣ사 :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물음

사　장 : 현재 사회복지 정책적 변화가 매우 크며, 국가에서 사회서비스법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법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공공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됨.

김　_ㅣ사 : 앞으로의 변화되는 상황에 잘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함.

사　장 : 앞으로 우리 법인에서도 시설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필요함. 향후 위탁시설에 대한 확대 및 운영시설의 재구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최근 법인산하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회·정책적 변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대　사 : 현재 사회복지환경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매우 큰 시기임.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법인의 방향성 변화는 물론 내·외부의 대응이 분명 필요한 시기임. 이에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임.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

황　ㅣ사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대　　사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해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3호 안건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함.

옥　　]사 : 동의함.

이　　]사 : 재청함.

참석　　.전원 : 찬성함.

대표　　사 : 제3호 의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라. 제4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 갱신

대　　사 :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 갱신의 건을 상정함.

석　　관장 :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의 건은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함.

사　　.장 : 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의 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제28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거하여 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및 갱신과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고자 함. 법인 임대 계약건물 중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며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86-7번지 해당 3층 171.04㎡ (수림교회-한남융)임.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월임차료 및 보증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변경됨.

대표　　ㅏ : 우리 법인에서 관리하는 임대건물이 계속 노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

김　　]사 : 현재 경제적 상황에는 임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임대료를 계속 상승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다 ㅏ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해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4호 의안 법인기본재산 임대계약의 건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가결할 것을 요청함.

이]사 : 동의함.

옥 .이사 : 재청함.

참 , ㅓ전원 : 찬성함.

대 . ㅏ : 제4호 의안 법인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의 건에 대하여 참석 이사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마. 제5호 의안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 승인

대 ㅏ : 제5호 의안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 승인의 건을 상정함.

석 ㅗ장 : 제5호 의안에 대해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함.

사 , ㅇ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 승인의 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금정구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현재 정책적 방향으로 맞추고자 함. 2000년 자활사업이 제도화 된 이후, 자활사업은 근로연계 복지제도이자 탈수급, 탈빈곤 정책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2015년 정부취업우선 지원정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 및 근로능력저하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 확대, 운영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함.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7조~30조에 따라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음.

대[illegible]사 :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석[illegible]장에게 부연설명을 요청함.

석[illegible]장 :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현2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 자활생산품우선구매 규정에 따른 판로 개척, 정부 타부처 공모 및 수주확보 등 자활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능, 사업수익성에 기반한 운영지원금 확보에 따른 직원 및 참여자 처우개선향상, 모법인의 사업영역확대를 통한 법인 지위향상, 지역사회에 적극적 사회안정망 지원이 가능함. 현재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2015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도 까지 총 11개소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음.

사[illegible] :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임. 현재 금정구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산하시설로 운영되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별도의 비영리 법인으로 분리 되는 상황임. 별도의 대표자(이사장)와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구성됨. 조합원은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생산자조합원이며, 조합원은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임.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 9명 이내 감사 1~2명으로 구성됨. 출자금은 별도로 책정예정임. 따라서 남광사회복지회 소속 산하시설로 큰 역할을 해오던 지역자활센터를 법인 분리를 통해 좀 더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하여 현재의 남광사회복지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법인과의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함.

석　　장 : 추가적으로 현재 자활센터의 종사자 임금체계는 복지관에 비해 85%에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인상이 동결된 상황이었음. 사업의 연속성과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부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이 많아 신청 후 결과를 기다려야함.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가 8~9월중 진행될 예정임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임.

김　　사 : 현재 본 안건에 대해 지역자활센터는 물론 법인사무국에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시범사업 공고 이후 세부적인사항에 대해 금정구지역자활센터 및 법인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5호 안건을 승인하는 것을 제안함.

대.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김　철이사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법인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임. 금정구지역자활센터는 타 지역자활센터보다 사업운영과 수익 등이 매우 우수하여 시범사업공모신청 시 매우 유리함.

김　　사 : 추가적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에서 대표자(이사장)의 선임은 누가되어야 하는지 묻고, 남광사회복지회의 대표이사인 박　형 대표이사가 겸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사무국장 등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 최근 대표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많은 상황임으로 대표자의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음.

이　　사 : 본 시범사업이 정식사업으로 운영 시 정책적, 제도적 보안은 반드시 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함.

황　　사 :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 및 조직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함. 다른 분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사　　장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조직은 물론 개인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 할 것임.

대:　사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을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5호 의안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 승인의 건을 현재 시범사업공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신청여부에 대한 권한을 법인 사무국에 위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하며, 이에 대해 가결할 것을 요청함.

이　　이사 : 동의함.

황　　이사 : 재청함.

참　　사 전원 : 찬성함.

대3　나 : 제5호 의안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재 시범사업공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신청여부에 대한 권한을 법인 사무국에 위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을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함.

2019년 07월 11일 (목)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박 (인)

이 사 이 (인)

이 사 김 (인)

이 사 이 (인)

이 사 정 (인)

이 사 황 (인)

이 사 옥 (인)

이 사 이 (인)

감 사 하 (인)

감 사 김 (인)